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59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한정애·김성환·문진석
박홍근·임오경·이학영
김 윤·양문석·조인철
이병진·김성희·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 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

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의3. “기후격차”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차이를 말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 및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한 보호대책
2.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의3.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u>
<u><신 설></u>	<u>2의3. “기후격차”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차이를 말한다.</u>
3. ~ 17. (생 략) <u><신 설></u>	3. ~ 17. (현행과 같음) <u>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 및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 적</u>

<신 설>

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한 보호대책
2.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의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 11. (생략)	<u>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책</u> <u>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u> <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u> <u>3의3.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u> 4. ~ 11. (현행과 같음)
---	---